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신천길 69-18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183-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86-22	2009-07-02	2019-12-24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51-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058	2009-07-02	2019-12-24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4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65-25	2009-07-02	2019-12-24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5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31	2009-04-01	2019-12-24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46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신천길 69-18	2009-04-01	2019-12-24	신천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238-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룩3길 64	2009-12-28	2019-12-24	우룩길의 시점으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07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137-10	2009-04-01	2019-12-24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공 고

□ 제 목 :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주민 공람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51번지 등 3지내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합니다.

○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내용

신 청 지					신청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지 목	계	채취장	산물처 리장	진입로	관리사 무소	그밖의 시설	
계			226,074		65,414	25,348	0	0	0	0	
주상	내오	산151	102,744	임	34,796	16,291					
		산162	52,066	임	245	3,214					
		산162-2	55,140	임	30,373	5,843					

- 토석채취신청기간 : 2019. 1. ~ 2021.12.31.(2년간)
- 채취용도 : 복구용 토석(사업장외 반출 불가)
- 채 취 량 : 324,480m³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주민의견 제시방법
 -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산림과 또는 주상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9.

거 창 군 수

거창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공람공고

경남공고 제444호(‘86.10.28)로 조성계획 수립된 거창 수승대 관광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9.

거 창 군 수

1. 관광지명 : 거창 수승대 관광지
2.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강천리 일원
3. 지정면적 : 297,679m²
4. 사업기간 : 1986~2025년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

구 분	토지이용계획변경(m ²)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m ²)		비 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297,679	297,679	59	64	15,949.6	16,048.6	100
공공편익시설지구	25,581	25,583	18	23	3,248.6	3,347.6	8.6
숙박시설지구	1,078	1,078	1	1	2,083	2,083	0.36
상가시설지구	5,696	5,696	11	11	1,530	1,530	1.91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58,222	58,225	28	28	9,088	9,088	19.56
기타시설지구	207,102	207,097	1	1	-	-	69.57

7. 시설지구내 건축계획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건 폐 율	용 적 륜	층 수	건 폐 율	용 적 륜	층 수
40% 이하	100% 이하	2층 이하 (숙박시설만 4층)	40% 이하	100% 이하	2층 이하 (숙박시설만 4층)

8.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총 계	297,679		297,679	100.00	100.00	
공익시설지구	소 계	25,581	증) 2	25,583	8.60	8.60
	관리사무소	3,243		3,243	1.09	1.09
	취사장	199		199	0.07	0.07
	화장실	535		535	0.18	0.18
	샤워장	157	증) 80	237	0.05	0.08
	상수도	288		288	0.10	0.10
	오수처리장	216		216	0.07	0.07
	다목적광장	3,924		3,924	1.32	1.32
	도로	12,178	감) 202	11,976	4.09	4.02
	주차장	4,391		4,391	1.48	1.48
	안내소	450	증) 27	477	0.15	0.16
	식수대	-	증) 97	97		0.03
숙박시설지구	소 계	1,078		1,078	0.36	0.36
	여관합시	1,078		1,078	0.36	0.36
상가시설지구	소 계	5,696		5,696	1.91	1.91
	상가	2,753		2,753	0.92	0.92
	매점	501		501	0.17	0.17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전통시장	2,442		2,442	0.82	0.82
	소 계	58,222		58,225	19.56	19.56
	모험시설	1,655		1,655	0.55	0.55
	간이수영장	11,001		11,001	3.70	3.70
	썰매장	3,596		3,596	1.21	1.21
	장비보관소	39		39	0.01	0.01
	어린이놀이시설	3,888		3,888	1.31	1.31
	목재체험장	4,472	감) 12	4,460	1.50	1.50
	조경휴게지	5,791		5,791	1.94	1.94
	구연서원	7,459		7,459	2.51	2.51
	요수정	79		79	0.03	0.03
	원각사	1,436		1,436	0.48	0.48
	야외공연장	4,237		4,237	1.42	1.42
	야영장	2,586		2,586	0.87	0.87
	오토캠핑장	11,983	증) 15	11,998	4.03	4.03
기타시설지구	소 계	207,102	감) 5	207,097	69.57	69.57
	자연취락용지	11,679		11,679	3.92	3.92
	무지개다리(현수교)	233		233	0.08	0.08
	녹지	195,190	감) 5	195,185	65.57	65.57

9. 공람 및 열람기간 : 공보 및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10.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관광시설담당)

11. 관계도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비치(☎055-940-3442)

거창군 공고 제2019 - 1571호

가조은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1992-4호('92.02.15)로 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가조은천 관광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9.

거 창 군 수

1. 관광지명 : 가조은천 관광지
2.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일원
3. 지정면적 : 230,673.6㎡
4. 사업기간 : 1994~2030년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

구 분	토지이용계획변경(㎡)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비 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230,673.6	230,673.6	101	103	173,464	173,464	100
공공편익시설지구	52,106.4	52,106.4	3	3	857	857	22.6
숙박시설지구	64,125.8	64,125.8	55	55	103,661	103,661	27.7
상가시설지구	30,136.4	30,136.4	39	40	47,074	47,074	13.1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25,248.6	25,248.6	4	5	21,872	21,872	11.0
기타시설지구	59,056.4	59,056.4	-	-	-	-	25.6

7. 시설지구내 건축계획 변경내용

■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획 지			
①	1	3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3	1 집수장 및 관리사 무소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집수장 및 관리사무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 이		2층 이하
	6	1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19	1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21	1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 숙박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변경	
①	6	2	용도	허용용도	·호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8층 이하		
	4	1	용도	허용용도	·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160%이하		
			높이	· 4층 이하		
	7	1-4	용도	허용용도	·여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가목 일반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9	1-7				
	11	1-8				
	12	1-8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3	1-9	건폐율		· 40%이하		
14	1-4	용적률		· 180%이하		
22	1-3,7-9	높이		· 4층 이하		
23	1-3					
24	1-3					

※ 4-1~6은 4-1로 합병되어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

■ 상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변경		
①	1	1	용도	허용용도	·주유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상가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화약류 저장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이	· 2층 이하			
	2	1-7	용도	허용용도	·상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상가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단,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8	1-6					
	10	1-5					
	17	1-3					
	18	1-8					
	20	1-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2	4-6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80%이하
	23	4	높이	· 4층 이하			

■ 운동·오락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획 지		기 정	변 경	
①	1	2 종합위락 센터	용도	허용용도	· 종합위락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운동오락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파목,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103%이하	
			높 이		· 3층 이하	
		3 테니스장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운동오락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 테니스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휴양·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획 지		기 정	변 경
①	3	2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휴양문화시설지구내 설치가능 시설 중 온천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15	1~2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8.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경		
계			230,673.6	-	230,673.6	100.0	
공공 편익 시설 지구		소 계	52,106.4	-	52,106.4	22.6	
	2	주차장	7,411.2	-	7,411.2	3.2	
	3	집수장 및 관리사무소	1,117.6	-	1,117.6	0.5	
	4	도로	43,577.6	-	43,577.6	18.9	
숙박 시설 지구		소계	64,125.8		64,125.8	27.7	
	5	호텔	6,265.5	감)6,265.5	-		
	6	여관	50,827.3	감)50,827.3	-		
	7	콘도미니엄	7,033.0	감)7,033.0	-		
	5	관광숙박시설	-	증)13,289.5	13,289.5	5.7	
	6	숙박시설	-	증)50,827.3	50,827.3	22.0	
상가 시설 지구		소계	30,136.4	-	30,136.4	13.1	
	8	일반상가	28,868.0	-	28,868.0	12.5	
	8-27	주유소	1,268.4	-	1,268.4	0.5	
관광 휴양 오락 시설 지구		소계	25,248.6	-	25,248.6	11.0	
	9	테니스장	1,441.0	-	1,441.0	0.6	
	10	종합위락센터	5,204.1	-	5,204.1	2.3	
	11	온천장	10,969.4	-	10,969.4	4.8	
	12	공원	7,634.1	-	7,634.1	3.3	
기타 시설 지구		소계	59,056.4	-	59,056.4	25.6	
	13	녹지	2,203.8	-	2,203.8	1.0	
	14	하천	56,839.4	-	56,839.4	24.6	
	15	광천지	13.2	-	13.2	0.0	

9. 공람 및 열람기간 : 공보 및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10.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관광시설담당)

11. 관계도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비치(☎055-940-3442)

『계동교외 1개교 재가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계동교외 1개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계동교외 1개교 재가설공사
-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계동마을, 장백마을 일원
- 다. 사업 내용 : 계동교, 장백교 재가설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하천담당)

2. 보상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일원(붙임참조)
- 나. 지 장 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12. 12. ~ 2019. 12. 27.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 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055-9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에이르르르르르	위치			지번 (분할)	지목		지적(㎡)		소유자	
	읍, 면	리, 동			대상	현실	대상상	편입적	주소	성명
장백교										
1	거창	마리	하고	603	답	전	112	1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39 105동 1601호 (정관1차 동원로얄듀크)	정종인
2	거창	마리	영승	479-1 (479-5)	답	답	2,008	5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35, 101동 905호(무거동, 무거워브자이)	정연욱
3	거창	마리	하고	604 (604-2)	답	전	136	34	거창읍 거열로 8길 13. 906호(상림리 사랑채아파트)	정진석
4	거창	마리	영승	454-4	답	답	1,506	1,506	거창읍 거열로 7길 29, 106동 1505호(대경넥스빌)	정병석
5	거창	마리	영승	455-4	답	전	395	395	부산북구구포동811-12	김정찬
6	거창	마리	영승	455-2	구	구	26	26	거창군마리면영승리488	정기영
계동교										
1	거창	마리	영승	272 (272-2)	답	전	78	28	거창읍 상동7길 46, A동 201호(영창빌라)	김석호
2	거창	마리	영승	272-1	도	도	1	1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신상균
3	거창	마리	영승	273 (273-3)	대	대	367	126	마리면 월계리 493	이문근
									마리면 월화길 178-7	이육근
									마리면 월계리 466	이우근
									마리면 계동길 166	김점식
4	거창	마리	영승	273-1 (273-4)	도	도	125	69	마리면 월계리 493	이문근
									마리면 월화길 178-7	이육근
									마리면 월계리 466	이우근
									마리면 계동길 166	김점식
5	거창	마리	영승	273-2 (273-5)	대	대	20	1	마리면 월계리 493	이문근
									마리면 월화길 178-7	이육근
									마리면 월계리 466	이우근
									마리면 계동길 166	김점식
6	거창	마리	영승	357 (357-1)	답	답	572	97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34길 45, 101동 1601호(공릉동, 효성아파트)	박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7, 1409동 502호(별내동, 별가람마을 내 1-4단지)	박일한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532, 921동 408호(상계동, 주공아파트)	박일형
7	거창	마리	영승	724-1 (724-7)	답	답	1,605	36	합천군 야로면 영서로 2840-8	박영순
8	거창	마리	영승	724-3 (724-7)	답	답	4,567	20	마리면 영승리 297	박쌍봉
9	거창	마리	영승	723 (723-2)	답	답	2,271	7	거창읍 거열로8길 33, 101동 801호(현대아파트)	이영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2007.03.29.)로 최초 결정, 거창군 고시 제2008-15호(2008.03.13.)로 최초 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4.

거 창 군 수

□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17,554	감)14,787	1,802,767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경미한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변경 - 1,817,554m²→1,802,767m² [감) 14,78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저수지 편입 부지 제척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3. 사업의 면적 (변경)

- 당 초 : 1,817,554㎡
- 변 경 : 1,802,767㎡ (감 14,787㎡)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합 계	1,817,554	감) 14,787	1,802,767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389,025	감) 51,307	337,718	21.4	18.7	
	건축시설 용지	8,540	증) 625	9,165	0.5	0.5	
	공공시설 용지	94,318	감) 4,569	89,749	5.2	5.0	
	녹지 용지	1,325,671	증) 40,464	1,366,135	72.9	75.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최익중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08년 3월 13일 ~ 2019년 12월 31일
- 변 경 : 2008년 3월 13일 ~ 2020년 09월 30일

6.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5필지		1,834,519	1,834,519	1,817,554	1,802,767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205	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2,172	2,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873	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423	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833	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1,236	1,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1,811,055	1,811,055	1,794,090	1,794,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3	신원면 덕산리	산13-12	임	750	750	750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14	신원면 덕산리	산13-13	임	14,037	14,037	14,037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15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2,182	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12. 24. ~ 2020. 1. 17.까지
- 신청대상 : 붙임 참조
- 지원조건·신청방법 등 : 붙임 참조
- 신청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선정절차 : 신청 ⇨ 검토 ⇨ 심의 ⇨ 선정
-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대상사업 : 2021년 시행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붙임 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2020년 기준) 1부.
2. 신청서(서식) 1부.

2019. 12. 24.

거창군수

'2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2019. 1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044-201-2351
		사무관 정창남	044-201-2357
		주무관 박정미	044-201-2363

I.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p)	2020(p)
합 계	134,436	206,406	154,170	153,865	133,606	159,688
국 고	42,708	49,760	43,150	36,908	35,050	50,293
용 자	44,968	70,030	65,822	55,710	48,295	55,523
지방비	38,990	56,234	33,591	39,509	33,162	39,319
자부담	7,770	30,382	11,607	21,738	17,099	14,553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 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 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 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젃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개별처리지원사업 5,000만원(총사업비 기준)은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 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 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 ① 축산농가 4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및 퇴비 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100ha이상 확보하여야 함(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②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 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 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 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쿰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킨드러,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킨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킨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스킨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킨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u>개별처리시설</u>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u>마을형 퇴비자원화</u>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액비저장조	20	50		30	
<u>액비유통전문조직</u>	30	50	-	2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u>퇴비부속도판정지원</u>	<u>50</u>	<u>50</u>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개별처리시설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148	60	70	42	68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⑧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x : 당해 시설용량, x ¹ : 작은 시설용량, x ²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 ¹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 ²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 개별처리 시설	개 별 농 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 마을형퇴비자원화	200				
·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38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정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 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 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 ⑥ 액비유통전문조직은 기 지원 전문조직(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 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바이오가스연계](#), ③에너지화)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마을형퇴비자원화](#))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추진계획 및 유통협약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바이오가스연계](#))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마을형퇴비자원화) 마을내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계획 및 공동 퇴비장 이용계획 등 퇴비 부속관리 계획
 -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퇴비·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마을형퇴비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상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 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용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용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ii)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용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0년 8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보 고 기 관	비 고
○ <u>2021년</u>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u>2020.3.31</u> 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u>2020년</u>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u>2021.1.05</u> 한 <u>2021.3.05</u> 한		
○ <u>2019년</u>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u>2020.3.15</u> 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u>2020.12.31</u> 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 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 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속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속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속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 참여 제한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 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환 류 》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속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1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0.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0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20년 시범사업 후 '21년 추진 검토)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1년 예산배정 및 교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사업별 지원요건

-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현재)	◦ 축 종 : ◦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5%;">총 사육두수</td> <td style="width: 25%;">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td> <td style="width: 25%;">육성축</td> <td style="width: 25%;">자 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r> </table>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	마리	마리	마리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보유시설현황	축사	퇴비사	액비저장조	()기타									
	동, m ²	m ²	톤										
4. 무허가시설현황	동, m ²	m ²											
5. 장비보유현황													
<신청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용자	자담				
계													
※ 시설공사의 경우 : 견적서 첨부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별지 제6호 서식 :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농경지 확보 면적(ha)	○기 확보(재활용신고필증)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⑨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농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u>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u> 의 날인이 있어야 함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거창군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센터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부숙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한다
- ②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해소
-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 ⑥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 ⑦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
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3]

액비살포 확인서

액비유통주체명 : (☎ :)

농가명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살포장소 :

살포면적(평) :

살포량(톤) :

재배작물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i) 시·군 업무담당자 입회, ii) 농가 입회, iii)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5]

액비 품질관리 및 시용량 산출

연 번	분석 일자	저장조 번호	액비성분 분석결과				액비 살포 대상지			토양검정치			살포량 산출		실제 살포량 (톤)
			N (%)	P (%)	K (%)	부속	지면	작물	면적 (㎡)	N (%)	P (%)	K (%)	산출 기준	산출량 (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작성방법>

- 저장조번호 : 보유 또는 위탁관리 저장조 번호
- 액비성분 분석결과 : 자체 분석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분석결과(근거자료 별첨)
- 토양검정치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흙토람 자료 활용
- 살포량 산출 : 액비와 토양검정치 결과 최소량 기준으로 산출
 - 가축분뇨 액비시용 매뉴얼(2011)을 근거하여 산출하되, 자료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받아 산출
- 산출기준 : N, P, K 중 산출기준 표기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 공고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12. 24. ~ 2020. 1. 17.까지
- 신청대상 : 붙임 참조
- 지원조건·신청방법 등 : 붙임 참조
- 신청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선정절차 : 신청 ⇨ 검토 ⇨ 심의 ⇨ 선정
-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대상사업 : 2020년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붙임 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2020년 기준) 1부.
2. 신청요약 및 관련 서식 각 1부.

2019. 12. 24.

거창군수

별도붙임 종자 신청서(서식) 1부. 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소 (톤)	식	대 (톤)		m ²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채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 요약

1 2020년 사업비(거창군)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천원)		
		계	보조	용자(자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업인, 경영체	960,000	864,000	96,000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경영체(법인 등)	595,040	238,016	357,024
	개인(농업인)	38,290	7,658	30,632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농업인, 축협 등	512,234	358,564	153,670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1.17.(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세부사업별 지원사항

세부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원형태 : 보조 90%, 자부담 10% ※ 신청 시 읍면에서 아그릭스(농림사업정소시스템) 입력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종 : 트랙터, 운반, 예취, 집초기, 곤포장비 등 ○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생산자 단체 : 보조 40%, 용자 30%, 자부담 30% - 개인(농업인) : 보조 20%, 용자 80% ○ 지원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 150백만원/30ha 기준(옥수수, 총채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는 300백만원) ※ 재배면적 10ha 미만 시 신청 제외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향후 종자공급가격 결정에 따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 신청 시 농업기술과 소관 녹비종자대 지원필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필지 확인

※ 세부사항은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참고

○ 제출서류

세부사업명	제출서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사업식품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조사료 생산사업계획서 1부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약정서 1부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내역 1부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파종계획서 1부 ○ 조사료 사일리지 판매 약정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류 1부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증빙자료(현금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사업식품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융자금이 있을 시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류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증빙자료(현금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신청관련 이사회 회의록 1부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동이용 운영 약관 1부 ○ 장비 구입 견적서 1부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별 신청 받아 엑셀 종자신청 서식에 작성 제출

20 년 경영체(법인) 조사료생산사업 계획서

○ 경영체명 : _____ 영농조합법인 대표 _____ (인) (구성인원 ___명)

○ 확인자 _____ 읍·면사무소 _____ 확인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 확인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생산량 입력 조치

- 구성인원 현황

성명	주소	직위	농업인 여부	전화번호

○ 경영체 조사료생산 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사업량 (대)	형식명	규격	가격 (천원)	구입년도	사업명	장비 관리자
예) 트랙터	1	T993	99마력	44,510	2009	자가구입	홍길동

○ 연도별 조사료 생산계획

연도별	재배면적(ha)	경종농가		축산농가		비고
		농가수	생산 계획량(톤)	농가수	희망 구입량(톤)	
20 (동계)						
20 (하계)						

○ 연도별, 초종별 사료작물 재배현황

구분	초종별 파종면적(ha)									
	계	청보리	호밀	IR	연맥	유채	옥수수	수단	목초	기타
20 년 가을파종										
20 년 봄파종										

○ 경종농가별 파종면적

연번	경종농가		초종별 파종면적(ha)									
	주소	성명	계	청보리	호밀	IR	연맥	유채	옥수수	수단	목초	기타
합계												
1												
2												
3												
4												
5												
6												
7												
8												
9												
10												

○ 축산농가 구입 계획

연번	축산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희망가격
	주소	성명	초종	물	톤	
합계						
1						
2						
3						
4						
5						
6						
7						
8						
9						
10						

2020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공고문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2020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2020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2. 지원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3. 지원내역 : 사업 신청 및 계획에 따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비율			
		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초지조성	1식	100%	50%	50%	-
초지조성부담금	1식	100%	70%	-	30%
컨설팅	1식	100%	70%	-	30%
기계장비	1식	100%	40%	30%	30%
기반시설	1식	100%	-	80%	20%
교육홍보	1식	100%	-	-	-

4. 지원한도 및 기준 : 붙임 참조
5. 신청기간 : 2020.1.17.(금)까지
6.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2020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709			
사업목적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비,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비용, 기계·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교육·홍보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초지조성부담금)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용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기반시설)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용자 지원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초지조성	국고	50	지방비	-	용자	50	자부담	-
	초지조성부담금		40		30		-		30
	컨설팅		40		30		-		30
	기계·장비		10		30		30		30
	기반시설		-		-		80		20
	교육·홍보		100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4,950	3,275	709	70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남기현, 김소연		044-201-2352, 2354			
신청시기	매년 1~2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된 자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초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동 제한규정은 '20년 법령위반자부터 적용하되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 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용자 80% 지원)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 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등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비가림 시설 등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등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5.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 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용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는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용자 지원

7.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
 - (지정농장)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선정농장)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 및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 (재지정) 3년마다 지정농장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며, 선정농장의 경우 지정농장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평가하여 지정 가능
- 신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규 신청 농가와 분야별 자문위원을 1:1로 연결하여 컨설팅 지원
 - (방법) 사업신청시 요청하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문위원과 1:1 연결
 - (자문위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매년 위촉
 - 산지생태축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지원 가능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9.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20.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20.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 3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20. 3~4월)
 -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20.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20. 4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20. 4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용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용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선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홍보 등 지원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부실관리농가 등에 대해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립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
 -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 신청

- 2021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년 사업과 동일하게 시·군에 신청(’20. 1월)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1년 사업신청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 3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신청 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일하게 2021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동일조건일 경우 2020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I. 일반현황

- 대표자 : (HP :)
- 설립연도 :
- 소재지 :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보유현황 (㎡/동/대)	0 동 (㎡)	0 동 (㎡)	0 동 (퇴비사 ㎡) (㎡)	_____ 대 _____ 대 _____ 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II. 사업계획서

가. 개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국비	보 조					
	응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III.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m ²)	금액(천원)

-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IV.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V.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20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구 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소계				보조	용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표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재지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계			
	축발 기금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5										
	'16										
	'17										
	'18										
	'19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5	'16	'17	'18	'19	계			
	계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 로고 의미 : 산지생태축산 모델이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담기 위해 주요 요소인 초지, 울타리, 사람, 자연, 동물을 조화롭게 구성함. 주요 축종인 한우, 젖소, 염소, 면양을 Shape으로 표현하였고, Green과 Sky blue는 자연과 하늘, Yellow는 동물, Red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함. 축종을 둘러싸고 있는 실선과 굵은 선은 울타리와 넓은 초지(원)을 의미함

○ 로고 TYPE A

상하조합 기본형



상하조합 응용형



좌우조합 기본형



좌우조합 응용형



○ 로고 TYPE B

상하조합 기본형



상하조합 응용형



좌우조합 기본형



좌우조합 응용형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소 (톤)	식		대 (톤)		m ²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채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I. 일반현황

- 대표자 : _____ (HP : _____)
- 설립연도 : _____
- 소재지 : _____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보유현황 (㎡/동/대)	0 동 (㎡)	0 동 (㎡)	0 동 (퇴비사 ㎡) (㎡)	_____ 대 _____ 대 _____ 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II. 사업계획서

가. 개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국비	보 조					
	응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III.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m ²)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도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IV.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V.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